

18. 地方稅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내무부 공고 제1997-13호

주요 골자

- 가. 고지서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3%로 조정하여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.
- 나.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신설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.
- 다. 건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를 건축법과 일치시키고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작물을 구축물의 범위에 추가함.
- 라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·정기시장·체인사업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·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·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.
- 마. 폐차된 사실이 입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함.
- 바.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를 추가하고, 분리과세대상토지에 접도구역안의 임야,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안의 임야를 포함하여 사권제한 정도가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이 이루어 지도록 함.

사. 농어민 후계자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 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함.

아. 새마을금고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때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.

제 안 이 유

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과세 기준을 명백히 하여 과세대상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